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15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임호선·송재봉·위성락

박지원 • 문대림 • 전진숙

정준호 · 오세희 · 이원택

이춘석 · 김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방지 등) ①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이 조에서 "불법카메라"라 한다)의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서 불법카메라 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 촬영물등(이하 이 조에서 "불법촬영물"이라 한다)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불법카메라 및 불법촬
	영물 방지 등) ①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
	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
	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
	<u>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이</u>
	조에서 "불법카메라"라 한다)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u>하여야 한다.</u>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시
	설물에서 불법카메라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
	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이 조에서 "불법촬영물"이라
	한다)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u>한다.</u>
	③ 공공기관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
	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